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국회는 투자법을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베트남 내에서의 사업 투자와 해외에서의 사업투자를 다룬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투자에 관련된 투자자, 다른 조직과 개인(앞으로 사업실체 라고 부른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아래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 는 투자 등록 허가서를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뜻한다.
2. 투자 프로젝트는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에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자본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의 집합물을 뜻한다.
3. 확대 프로젝트는 규모를 확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고, 오염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4.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최초로 실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현재 가동 중인 다른 프로젝트와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뜻한다.

5. 사업투자는 사업조직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출자하거나; 사업 조직의 주식을 사거나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계약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뜻한다.
6. 투자 등록 증명서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종이 또는 전자문서를 뜻한다.
7. 국가 투자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경영업무에 이바지하고 투자자의 투자 진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전반적인 투자의 검색, 평가 그리고 분석을 위한 전문적 정보 체계를 뜻한다.
8.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조합계약(앞으로 PPP계약이라 부른다)은 이 법 제27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과 투자자 혹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9. 업무협동계약은 새로운 사업 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 협력과 이익, 물품의 분배를 위하여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10. 수출가공지역(Export-processing zone)은 수출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되는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산업공단을 뜻한다.
11. 산업공단(Industrial park)이란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산업적 생산과 산업적 생산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지역을 뜻한다.
12. 경제지역은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방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수의 섹터로 구성된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지역을 뜻한다.
13. 투자자는 사업투자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뜻한다.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자, 외국 투자자, 외국에서 투자된 사업조직을 포함한다.
14.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내에서 사업투자를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률

하에서 설립된 조직을 뜻한다.

15. 베트남 투자자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그 구성원이나 주식 소유자가 외국 투자자가 아닌 사업조직을 뜻한다.

16. 사업조직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조직을 뜻한다. 사업조직은 회사, 합작사, 합작 연합, 기타 사업투자를 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17. 외국 투자 기업조직은 그 구성원이나 주식 소유자가 외국 투자자인 사업을 뜻한다.

18. 자본은 사업에 투자된 금전 기타 자산을 뜻한다.

제4조 투자법, 관련 법률과 국제 조약의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행하여 지는 투자는 이 법과 관련 법률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금지된 사업분야, 조건부 사업분야 또는 투자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안보법, 신용조직법, 보험법, 석유법에 규정된 투자절차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이 법의 규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이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 투자자이거나 사업조직인 계약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합의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 법률 혹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투자에 관한 정책

1. 투자자는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이 법 및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주적으로 사업투자를 결정 할

수 있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여 자금, 지원 기금, 토지와 기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자산, 자본, 소득, 기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해관계는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된다.

4. 국가는 투자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의 사업투자를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 섹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소개하여야 한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사업투자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가에 의해 지지된다.

제6조. 금지 사업분야

1. 아래 활동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a) 부록 1에 규정된 마약물질의 거래

b) 이 법의 부록 2에 규정된 화학물질과 미네랄의 거래

c) 멸종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부록 1에 규정된 야생 동식물 종의 거래; 이 협약의 부록 3의 1 그룹에 있는 희귀 혹은 멸종 동식물 종의 거래

d) 매춘

dd) 인신매매;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의 거래

e) 인간 복제에 관한 사업

2. 정부의 규정은 분석, 시험, 과학적 연구, 의학적 연구, 의약품의 생산, 범죄의 수사, 국방과 안보의 기간 동안에 이 조의 제1항의 a), b), c) 목에 언급된 생산과 그 생산물의 이용에 적용된다.

제6조, 조건부 사업분야

1. 조건부 사업분야는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녕, 사회 도덕 또는 공공의 건강의 이유 때문에 투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업분야이다.
2. 조건부 사업분야의 목록은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3. 이 조의 2항에 언급된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조건은 법률, 훈령(Ordinances), 명령(Decrees),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다. 부처와 부처 기관, 인민회의(the People's Council),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그리고 기타 사업실체는 사업투자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투자의 조건은 이 조의 제1항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조건부 사업분야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국가 회사 등록 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사업투자 조건의 공고와 통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 금지 사업분야의 목록과 조건부 사업분야의 목록의 수정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국가 경영 필요에 따라, 정부는 금지사업분야와 조건부 사업분야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 보장

제9조. 자산 소유권의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은 국유화되거나 행정조치로서 몰수되지 않는다.

2. 국방과 안보, 국가적 이해, 국가 긴급사태, 자연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이유로 자산이 국가에 매도되거나 징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재산징발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받거나 보상받는다.

제10조. 사업투자의 보장

1. 국가는 투자자에게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을 요청할 수 없다.
 - a) 국내 재화나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 사용케 하거나, 베트남 생산자나 용역 제공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만을 구매, 사용하는 것
 - b) 어떤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베트남에서 수출되거나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양, 질, 형태를 제안하는 것
 - c) 수출된 물건의 양, 질과 동등한 양, 질의 재화를 수입하거나 수출로 인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수입 소요와 수지를 맞추는 것
 - d) 일정한 비율의 수입대체를 달성하는 것
 - dd) 국내 연구와 개발의 일정한 수준/수치를 달성하는 것
 - e) 베트남 내의 또는 해외의 특정한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것
 - g)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의거, 어느 장소에 주사무소를 갖는 것
2. 사회 경제 개발의 방향, 외환 운용정책과 각 시기의 외환 거래에서 수지를 맞추는 능력에 따라. 수상은 국회, 수상의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기타 기반시설의 개발(infrastructural development)에 대한 중요 투자 프로젝트의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의 이행을 보장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보장

베트남 정부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외국 투자자는 다음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청산금;
2. 사업투자로부터의 수입;
3.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하에 있는 금전, 기타 자산

제12조.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보증

1. 수상은 국회, 수상의 투자 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투자프로젝트와 기타 기반시설의 개발(infrastructural development)에 대한 중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나 국가 소유 회사에 의하여 집행되는 계약에 대한 보증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13조. 법률변경에 관한 사업투자의 보장

1. 현재 투자자가 향유하는 것보다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법이 공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가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남은 기간동안 신규의 인센티브를 계속 향유한다.
2. 현재 투자자가 향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법이 공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가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남은 기간동안 현행의 인센티브를 계속 향유한다.
3. 법의 규정이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보안, 사회 도덕,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보호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때는 이 조의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만일 이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더 이상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음 해결방법의 하나 또는 몇 개를 채택한다.
 - a) 투자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 b)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을 조정한다.
 - c) 투자자가 손해에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이 조의 제4항이 규정하는 투자 보장수단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투자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1. 베트남에서의 사업투자를 둘러싼 분쟁은 협상과 보정으로 해결한다.
만일 분쟁이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은 이 조의 제2, 3, 4항에 따라 중재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베트남 투자자와 외국 투자 사업조직 사의의, 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의 사업투자에 대한 베트남 투자자, 외국 투자 사업조직과 규제 당국 사이의 각 분쟁은 이 조의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중재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어느 일방이 외국 투자자이거나 이 법의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조직인 투자자들 간의 각 분쟁은 다음의 기관/조직의 하나에 의하여 해결한다.
 - a) 베트남 법원
 - b) 베트남의 중재기관
 - c) 외국 중재기관
 - d) 국제 중재기관
 - dd)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설립된 중재기관
4. 베트남의 영토 내에서의 사업투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와 규제 당국 사이의 각 분쟁은, 달리 합의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베트남의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1부: 투자 인센티브

제15조.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와 수익자

1. 인센티브의 형태

- a) 일정한 기간 또는 프로젝트 집행 동안 일반보다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의 면제, 공제
- b) 고정자산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 감축하는 것;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원자재, 필수용품, 부품
- c)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의 면제, 감축

2. 투자 인센티브의 수익자

- a) 이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에 하는 프로젝트 투자;
- b) 이 법 제 16조 제2항에 규정된 투자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행정부분에 하는 투자;
- c) 자본 투자금이 최소한 6조 베트남 동이거나, 적어도 6조 베트남 동이 투자등록허가서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부된 날로부터 03년 이내에 지출되는 프로젝트
- d) 적어도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촌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 dd) 하이 테크 회사, 과학 기술 회사, 그리고 과학 기술 조직

3. 투자 인센티브는 신규의 프로젝트와 확대 프로젝트에 제공된다. 각 형태의 인센티브 수준은 세금과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명시된다.

4. 이 조 제2항의 b, c, d 목의 규정은 광물 채굴 프로젝트, 차량 제조를 제외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재화의 제조/ 판매 프로젝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 와 행정부문

1.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

- a) 하이테크 활동, 하이테크 부수 생산품; 연구와 개발
- b) 새로운 물질, 새로운 에너지, 청정(clean)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생산; 최소한 30%의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의 생산; 에너지 절약 상품
- c) 핵심 전자, 기계 상품, 농업용 기계류, 차량, 차량 부품의 생산; 선박 건조
- d) 직물과 섬유산업, 가죽과 신발류 산업에 이용되는 부수 상품의 생산, 이항의 c목에 있는 상품
- dd) IT 상품, 소프트웨어 상품, 디지털 콘텐츠(contentens)의 생산
- e)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작과 가공; 조림과 산림보호; 소금의 생산; 어업과 어업에 부수적인 용역; 식물 개량품종, 가축사료(animal breads), 생물공학화적 상품의 생산
- g) 집수, 수처리, 물의 재활용
- h)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운용, 관리에의 투자; 도시지역에서의 공중 승객 운송의 개발;
- i)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여가 교육
- k) 의학 실험과 처치;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의 성분, 필수 의약품, 성교로 전염되는 질병의 방지와 처치에 대한 약품, 백신, 생물학적인 약제, 약초(herbal)과 약품, 한약; 신약 발명에 이용되는 예비기술(preparation technology)과/또는 생물공학에 대한 과학연구
- l) 장애인 또는 전문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에의 투자;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 m) 노인(병) 센터, 정신건강 센터, 고엽제 환자의 처치에의 투자; 노인, 장애인, 고아, 유랑아를 위한 치료센터
- n) 국민의 신용기금, 소액대출 기구

2.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부부문

a) 불리한 지역에 있거나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행정부문

b) 산업공단, 수출가공 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의 목록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부부문의 목록을 집계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 인센티브의 절차

1. 프로젝트의 투자등록허가가 승인되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허가서에 투자 인센티브, 근거, 그리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의 조건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만일 투자등록허가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투자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에게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이 법의 제15조, 제16조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조건따라 세무당국, 재정당국 또는 관세당국에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

특별히 중요한 분야나 행정-경제 단위가 필요로 할 때 정부는 국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있는 것과 다른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부: 투자지원

제19조. 투자지원의 형태

1. 투자지원의 형태

- a) 프로젝트의 외곽지역을 넘어서까지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의 개발에 대한 지원;
- b) 인적자원의 훈련과 개발에 대한 지원;
- c) 신용지원;
- d) 사업 부동산에의 접근에 대한 지원; 제조설비의 도시지역으로부터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
- dd) 과학적 기술적 연구,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 e) 시장개발,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
- g) 기술과 개발에 대한 지원

2. 정부는 중소기업, 하이테크 회사, 과학기술 회사와 과학기술 조직, 농업에 투자하거나 농촌에 투자하는 회사, 교육, 법률의 보급에 투자하는 회사, 기타 각 시기에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부합하는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이 조의 제1항의 투자지원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지원

1.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개발에 대한 승인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 따라, 각 부처, 부처 기관,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특별한 섹터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의 건설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불리한 지역 또는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의 외곽지역 안팎으로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을 일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과 무료 자본 대출을 통한 개발에의 자본 투자 부분을 지원하

여야 한다.

3. 국가는 경제구역과 하이테크구역에서의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과 무료 자본 대출을 통한 개발에의 자본 투자 부분을 지원하고, 기타 자본 유동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

1.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개발에 대한 승인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 따라,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2. 만일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업단지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베트남 내에서의 투자

제1부: 투자의 형태

제22조. 사업조직의 설립에의 투자

1. 투자자는 법에 따라 사업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법 제37조의 절차에 따른 투자 등록허가서를 신청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이 조 제3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투자자의 정관자본금

b) 투자 형태, 활동범위, 베트남 파트너, 기타 다른 사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본을 매입하거나 계약에 따른 투자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직을 통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외국 투자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업조직에 투자된 불확정적인 양의 정관 자본금을 소유할 수 있다.

a) 목록에 있는 회사, 공공 회사, 보험 거래 조직과 보험투자 펀드에 있는 외국 투자자의 재산(holdings)은 보험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지분화되거나(equitized) 전환된 국가소유의 회사에 있는 외국 투자자의 재산은 국가 소유 회사의 지분화와 전환에 관한 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c) 이 항의 a목, b목에서 말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외국 투자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제23조. 외국투자 사업조직에 위한 투자

1. 사업조직을 설립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자본을 구매하거나,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협력계약 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는 외국투자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사업조직이 조합(partnership)이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일 때

b)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c)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외국인과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2. 이 항의 a, b, c에서 언급한 경우와 다른 경우에 있는 외국 투자 사업조직은 베트남 투자자가 사업조직을 설립할 때, 자본을 출자할 때, 주식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구매할 때, 사업협력계약 하에서 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투자절차를 따라야 한다.

3. 베트남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투자 사업조직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가질 때, 그러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는 새로운 사업조직을 설립함이 없이 진행된다.

4.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업조직을 설립하는데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자본을 매입함으로써 투자하기

1. 투자자는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할 권리가 있다.

2.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함으로써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이 법의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하는 방법과 조건

1. 외국 투자자는 다음 방법으로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a) 기업공개(IPOs) 또는 추가 발행을 통한 주식회사 주식의 매입

b) 유한책임회사와 조합에의 자본 출자

- c) 이 조의 a목과 b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업조직에의 자본 출자
2. 외국투자자는 다음 방법으로 사업조직의 주식 또는 출자 자본을 구입할 수 있다.
- a) 회사나 주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 b) 사원으로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자본을 구입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 c)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출자 자본을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
 - d) 이 조의 a, b, c목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사업조직에의 출자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입하는 것
3. 외국인이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방법으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하는 것은 이 법의 제22조 제1항의 a목과 b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절차

1. 투자자는 다음 경우에 자본 출자, 주식이나 출자 자본의 매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 a) 투자자가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자본을 매수할 때
 - b) 자본금이 출자되거나 주식/출자 자본이 매수된 이후 사업조직의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이 외국투자자 그리고/또는 이 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한 사업조직이 소유한 때
2.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 신청
- a)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에 대한 서면 신청. 투자가 이

루어지는 사업조직, 투자가 이루어진 후의 외국 투자자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b) 신분증(ID)카드 또는 여권의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허가증의 사본 혹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그와 동등한 서류(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3.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 절차

a) 투자자는 사업조직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계획투자부서에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만일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가 이 법 제22조 제1항 a목과 b목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획투자부서는 투자자가 법에 규정된 주주/사원 변경절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적법한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획투자부서는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투자자는 자본을 출자하거나 또는 주식/출자자본을 매수할 때 법이 규정한대로 주주/사원 변경을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일 그러한 투자자가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PPP계약 하의 투자

1. 투자자와 프로젝트 운영 회사는 신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건설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고, 운영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권한있는 관청과 PPP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정부는 PPP계약하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한 분야, 조건,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협력계약하에서의 투자

1. 베트남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력계약은 사법에 따라 집행된다.
2. 이 법 제37조의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절차는 베트남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혹은 외국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력계약에 적용된다.
3. 업무협력계약의 당사자는 업무협력계약을 집행할 조종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조종위원회의 기능, 업무, 권한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

제29조. 업무협력계약의 내용

1. 업무협력계약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a)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권한 있는 대표자; 사업주소 또는 프로젝트 주소
 - b) 목적과 사업의 범위
 - c)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공헌과 이익의 분배
 - d) 계약의 스케줄과 기간
 - dd)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e) 계약의 조정, 이전, 종료
 - g) 계약 위반의 책임; 분쟁해결의 방법
2. 업무협력계약의 집행 중에 당사자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업무협력으로부터 파생한 자산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3. 업무협력계약의 당사자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 기타 합의를 할 수 있다.

제2부: 투자 정책의 결정에 관한 절차

제30조.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국회의 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
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국회는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1.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에 잠재적으로 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다음을 포함한다.

a) 핵발전소

b)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50헥타 이상의 시험림; 50헥
타 이상의 상류 보호림; 500헥타 이상의 바람, 모래, 파도, 토지 개간, 환경보
호를 위한 보호림, 1,000헥타 이상의 생산림에 있는 토지의 목적을 변경하는
프로젝트

2. 500헥타 이상의 쌀이나 두가지 이상의 작물의 재배를 위한 토지의 목적을
변경하는 프로젝트.

3. 고지에서의 20,000명 이상, 다른 지역에서는 50,000명 이상 사람의 이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4. 국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제31조.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수상의 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
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와 이 법 제30조에서 말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수상은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1. 자본금 출처와 관계없이 다음의 프로젝트

a) 고지에서의 10,000명 이상, 다른 지역에서는 20,000명 이상 사람의 이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b) 공항, 항공운송의 건설과 운영

c) 국가 항만의 건설과 운영

- d) 석유탐사, 채굴과 정제
 - dd) 도박과 카지노 서비스
 - e) 담배 제조
 - g) 산업공단, 수출가공지역 그리고 경제구역 내 특화된 섹터의 사회기반 시설의 개발
 - h) 골프 코스의 건설과 운영
2. 투자가 5,000,000,000동 이상으로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프로젝트
3. 해상운송,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조립, 출판, 신문, 전적으로 외국이 투자하는 과학 기술 조직이나 과학 기술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4. 법의 규정에 따라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

제32조. 지역 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권한

1.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말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지역 인민위원회는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a) 경매나 청구나 이전 없이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프로젝트;
 - b) 기술이전에 관한 법에 규정된 이전이 제한된 기술 목록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에 부합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그리고 경제구역에서 집행되는 이 조 제1항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은 지역 인민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제33조.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1. 프로젝트 서류는 아래 것들을 포함한다:

- a)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허가에 대한 서면의 요청서
- b) 신분증(ID) 카드 또는 여권의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허가증의 사본 혹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그와 동등한 서류(투자자가 조직이 경우)
- c) 프로젝트의 투자자, 투자대상, 투자규모, 투자 자본금,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 투자의 위치와 기간,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의 요구,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의 평가를 명시한 투자 제안
- d)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사본: 투자자의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모회사의 약속;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설명
- dd) 토지사용에 대한 요구; 만일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가에 의하여 토지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혹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한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타 서류의 사본.
- e) 이 법 제32조 제1항 b목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에의 기술적용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기술의 명칭, 원천, 기술 과정 도표, 주된 사양, 기계장비류의 조건, 주요 기술 라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g) 업무협력계약(프로젝트가 업무협력계약 하에서 집행되는 경우)

2. 투자자는 이 조 제항에 규정된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투자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적법한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이 조 제 6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청받은 기관은 등록사무소에 서면 회신을 보내야 한다.
5. 등록사무소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대로 평가하는 데에 대한 기초로서 토지당국은 지도 사본을 제공하고 계획당국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투자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의 투자자, 업종, 규모, 위치와 기간에 관한 정보
 - b)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조건(만일 있다면)의 실천에 관한 평가
 - c)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산업계획 그리고 투지계획과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 d)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조건(만일 있다면)의 실천에 대한 평가
 - dd) 투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의 법적 기처에 대한 평가; 만일 토지의 할당, 토지의 임대, 토지 용도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토지 사용,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투자자의 조건의 실천 여부가 토지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e) 투자 플젝트에 적용된 기술의 평가(만일 프로젝트가 이 법 제32조 제1항 b목에 언급된 기술의 하나일 경우)
7. 프로젝트 문서와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 설명을

제공한 서면 답변을 하여야 한다.

8. 지역 인민위원회가 발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a)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름
- b) 프로젝트의 명칭, 업종, 규모, 투자 자본과 기간
- c) 프로젝트의 위치
- d) 프로젝트 집행의 일정 : 자본 출자와 자본 조달에 대한 일정;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식(만일 있다면)에 대한 일정; 각 단계의 일정(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면)
- dd) 적용된 기술
- e)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 g)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유효한 기간

9. 정부는 그 투자정책이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문서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의 결정에 대한 서류와 절차

1. 투자자는 투자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이 법 제33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 b) 토지 정리(clearance)와 이주 계획(만일 있다면)
- c) 환경영향과 환경보호대책의 예비 평가
- d)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2. 합법적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그것을 계획투자부에 송부하고,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기관은 등록사무소와 계획투자부에 서면 회신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지역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문서의 평가를 요청하고,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투자문서를 평가하고 이 법 제33조 제5항에 규정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수상은 이 법 제33조 제8항에 규정된 투자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정부는 그 투자정책이 수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문서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서류와 절차1. 투자자는 투자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이 법 제33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 b) 토지 정리(clearance)와 이주 계획(만일 있다면)
- c) 환경영향과 환경보호대책의 예비 평가
- d)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 dd) 제안된 특별 정책(만일 있다면)

2. 합법적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그것을 계획투자부에 송부하고, 계획투자부는 보고서를 수상에게 보내어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프로젝트 문서

를 평가하고 이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회의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정부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은 다음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a) 정부의 보고서

b)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문서

c) 평가위원회에서 작성된 평가보고서

d) 관련 서류

6. 평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a)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 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의 충족

b) 프로젝트의 필요성

c) 프로젝트가 기본적 사회 경제적인 개발계획, 산업계획 그리고 토지 기타 자원계획과 일치한다는 것

d) 업종, 규모, 위치, 시간,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일정; 토지사용에 대한 요구, 토지 정리와 이주계획, 일차적 기술의 선택, 환경 보호 해법;

dd) 자본투자과 자본조달 계획

e)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g) 특별한 정책;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7. 정부와 관련실체들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국회는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름
 - b) 프로젝트의 명칭, 업종, 규모, 투자 자본과 기간, 자본출자와 자본조달 일정
 - c) 프로젝트의 위치
 - d) 프로젝트의 일정 :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식(만일 있다면)에 대한 일정; 일차적 타켓과 아이템의 이행 일정; 각 단계의 타켓, 기간과 운영(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면)
 - dd) 적용된 기술
 - e) 특별한 정책;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 g)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유효한 기간
9. 정부는 평가위원회가 행하는 프로젝트 문서의 평가에 대한 서류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부: 투자 등록

제36조. 투자등록증이 요구되는 경우

1. 다음경우에 투자등록증이 요구된다.
 - a) 외국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 b) 이 법의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
2. 투자등록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a)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 b) 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
 - c)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구매함으로써 투자하는 경우
3. 베트남 투자자와 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은 투자정책이 결

정된 뒤 이법 제 30조, 제31조, 그리고 제32조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제2항 a목과 b목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등록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 법의 제37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등록증 발행의 절차

1. 프로젝트가 이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면, 등록사무소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가 이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면, 투자자는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a) 투자자는 이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b)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거절하는 설명이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투자등록증을 발행, 변경, 조정하는 권한

1.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는 그 안에 위치한 투자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2. 계획투자국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 밖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다만 이 조의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점 사무소 또는 운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계획투자국은 다음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 a) 복수의 지역에 걸쳐 있는 투자 프로젝트
- b)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안과 밖에서 집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제39조. 투자등록증의 내용

- 1. 프로젝트의 코드
- 2.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 3. 프로젝트의 이름
- 4. 프로젝트의 위치와 면적
- 5. 프로젝트의 업종과 규모
- 6. 프로젝트에의 자본 투자(투자자의 자본과 조달한 자본을 포함한다), 자본 출자와 자본조달의 일정
- 7. 프로젝트의 기간
- 8. 프로젝트 집행 일정: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만일 있다면) 일정; 일차적 타켓과 아이템의 수행 일정; 각 단계에 있어서의 타켓, 기간, 작업(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면)
- 9.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 10.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만일 있다면)

제40조. 투자등록증의 변경

- 1. 투자등록증이 변경되어야 할 때,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신청은 아래 사항으로 구성된다:
 - a) 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서면 요청
 - b) 프로젝트 변경시까지의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보고서
 - c) 투자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결정
 - d) 변경에 관한 이 법 제33조 제1항 b, c, d, dd, e목에 규정된 서류
3. 이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적법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에는 설명이 제공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만일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면, 그 변경이 프로젝트의 업종, 타켓, 일차적 기술, 10% 이상의 자본투자의 증감, 프로젝트 기간, 투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만일 있다면)의 변경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전에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만일 투자등록증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된다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전에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1조. 투자등록증의 취소

1. 등록사무소는 프로젝트가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 투자등록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투자등록증의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부 : 프로젝트 집행

제42조. 프로젝트 집행을 보장

1. 투자자는 만일 그의 프로젝트가 국가로부터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할 때 혹은 국가에 의하여 토지용도 변경이 허용될 때, 프로젝트 집행의 보장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증금은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집행 일정에 따라 자본 투자의 1%-3%와 같다.
3. 보증금은 그것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43조.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

1. 경제구역 내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은 7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경제구역 밖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은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여건이 불리하거나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 혹은 자본회수율이 낮은 프로젝트는 50년을 넘을 수는 있으나 70년을 넘을 수는 없다.
3. 만일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나 토지 이전이 지체될 경우, 지체기간은 프로젝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4조. 기계, 장비와 기술 라인의 평가

1. 투자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와 기술라인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과학 기술의 국가적 관리 또는 과세 기초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관리기관은 기계, 장비와 기술라인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 프로젝트의 이전

1.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 a) 프로젝트가 이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종료되지 않을 것
 - b)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 업종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를 받았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된 투자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 c) 프로젝트 이전이 토지의 이전과 관련될 경우 토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할 것
 - d) 투자등록증에 있는 조건 또는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2. 프로젝트의 이전이 투자등록증의 발행에 따라야 한다면, 투자자는 이 법 제33조 제1항에서 언급한 서류와 투자자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프로젝트 일정의 연기

1. 만일 투자등록증이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행되었다면, 자본투자일정, 건설일정과 착공식 일정(만일 있다면); 티켓에 대한 일정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자는 서면 제안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의 내용
 - a)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연기하는 날까지 프로젝트의 과정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이행
 - b) 연기에 대한 설명과 기간
 - c) 자본 출자 계획, 사회기반시설 개발 일정과 착공식 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 d)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투자자의 약속
3. 연기는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회복되는 시

간은 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프로젝트 연기와 종결

1. 프로젝트를 연기할 때에는 투자자는 서면으로 등록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어야 할 때에는, 투자자는 불가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연기기간 동안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면제받는다.

2. 투자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적인 유적, 유물, 골동품, 국가 보물의 보호를 위하여

b) 환경당국의 요청에 따른 환경복구를 위하여

c) 노동당국의 요청에 따른 직업적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d) 프로젝트는 법원이나 중재법정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연기된다.

dd)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을 고수하지 못하고 벌칙을 부과 받고 난 뒤 재차 행정위반을 했을 경우

3. 수상은 프로젝트 집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계획투자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 프로젝트의 종료

1.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a)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를 결정한 때

b) 프로젝트는 계약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 c)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된 때
 - d) 이 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프로젝트 연기를 야기시킨 곤경을 투자자가 극복하지 못 하였을 때
 - dd) 프로젝트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환수되거나 투자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지 못하고 토지/부동산 환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의 위치변경에 대한 절차를 완결하지 못 하였을 때
 - e) 등록사무소는 프로젝트를 연기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지난 뒤에는 투자자나 투자자의 법적 대표자를 접촉할 수 없다.
 - g)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일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이 법 제46조에 규정된 대로 프로젝트 집행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
 - h) 프로젝트는 법원이나 중재법정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2. 등록사무소는 이 조 제1항 d, dd, e, g와 h목에 언급된 경우에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투자자는 자산청산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청산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환수되었으나 투자자가 환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토지에 있는 자산을 청산하지 못 하였을 때, 토지환송 관한 명령을 발한 기관은 그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49조. 업무협력계약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의 설치

1. 업무협력계약 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에 영업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영업사무소의 위치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업무협력계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는 그 자신의 입장을 갖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에 서명하고 업무협력계약과 영업사무소의 등록증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자는 영업사무소가 위치하려는 곳에 있는 등록사무소에 영업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서는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 진다:
 - a) 신청서 양식. 양식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만일 있다면)의 이름과 주소; 영업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영업사무소의 내용, 기간과 영업 범위; 영업사무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나 여권번호를 명시한다.
 - b) 영업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
 - c) 영업사무소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결정의 사본
 - d) 업무협력계약의 사본
5.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영업사무소의 등록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업무협력계약 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의 폐쇄

1. 영업사무소를 폐쇄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자는 영업사무소가 위치한 등록사무소에 인쇄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쇄물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 a) 일정에 앞서 영업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결정
 - b) 채권과 확정된 부채의 목록
 - c) 고용주와 고용주에게 제공된 급여의 목록
 - d)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세무당국의 증명서

dd) 사회보험의무를 완납하였다는 사회보험당국의 증명서

e) 공안당국의 인장 파괴 증명서

h) 투자등록증의 사본

l) 업무협력계약의 사본

3. 접법한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영업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5장. 해외 투자

제1부 : 일반 규정

제51조. 해외 투자를 하는 규칙

1. 투자자들은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용역의 수출과 외국환의 수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 기술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경영능력을 높이고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해외 투자를 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2.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 투자가 행해지는 국가 또는 영토(이후 주된 국가라고 한다)의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52조. 해외투자의 형태

1.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해외투자
 - a) 주된 국사의 법률에 따라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것
 - b) 해외에서 업무협력계약을 집행하는 것

- c) 해외 경영 및 사업 투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 사업조직의 정관 자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수하는 것
 - d)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채권투자기금이나 기타 해외 간접 재정 기구를 통한 투자
 - dd) 주된 국가의 법에 규정된 기타 투자형태
2. 정부는 이 조 제1항 d목에 언급된 투자의 형태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53조. 해외투자를 위한 자원(자본의 원천)

- 1.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거나 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외국환을 차입하거나 외국환 자금을 송금하는 조건과 절차는 은행, 신용기관과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2. 통화정책, 각 시기에 있어서의 외국환 관리정책의 목표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은 해외투자를 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환 차입을 승인하는 베트남 내에서의 신용기관과 외국은행의 지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부 : 해외투자정책의 결정에 관한 절차

제54조.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권한

- 1. 국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a) 해외 투자 자본금이 20조 베트남 동 이상의 프로젝트
 - b) 국회에 의하여 결정해야할 특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 2. 이 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이 아래 사항에 대한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a) 해외투자 자본금이 4,000억 베트남 동 이상인 은행, 보험, 채권, 신문, 방송과 통신 프로젝트;
- b) 해외투자 자본금이 8,000억 베트남 동 이상인 프로젝트로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

제55조. 수상이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서류와 절차

1.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프로젝트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아래 사항으로 구성된다:

- a) 해외투자등록 양식
- b)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동등한 서류(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프로젝트 제안 : 프로젝트의 업종, 규모, 형식과 위치; 초기 자본금, 자본조달계획, 자본구조, 프로젝트 집행일정, 투자 단계(만일 있다면); 그리고 프로젝트 효율성에 대한 일차적 분석
- d)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중 하나의 사본 :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모회사의 약속;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dd) 외국환 재원을 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약속 또는 투자자에게 외국환을 공급하겠다는 허가된 신용기구의 약속
- e) 이 법 제57조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
- g) 은행, 채권, 과학과 기술에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용기관법, 채권법, 과학기술법 그리고 보험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해외투자에 대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문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그 문서를 관련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기관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평가를 수행하고 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이 법 제58조에 규정된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의 조건

b) 투자자의 법적 지위

c) 해외투자의 필요성

d) 프로젝트가 이 법 제51조 제1항과 일치함

dd) 프로젝트의 내용: 규모, 투자의 형태, 위치, 기간, 일정의 집행, 자본과 자본의 재원

e) 주된 국가에서의 위험요소의 재평가

5. 수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외투자정책의 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a) 투자자

b) 프로젝트의 업종과 위치

c) 자본과 자본의 재원; 자본출자와 자본조달 일정; 해외투자 일정

d)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만일 있다면)

제56조. 국회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문서와 절차

1. 투자자는 이 법 제55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법한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수상에게

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 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국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60일 전에 정부는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이루어 진다:
 - a) 정부의 보고서
 - b) 이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문서
 - c) 평가위원회에서 만든 평가보고서
 - d) 관련 서류
5. 국회는 해외투자정책, 이법 제55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결정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부 : 해외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정 그리고 취소에 대한 절차

제57조. 해외투자를 결정할 권한

1. 국가가 소유한 회사는 기타 사업에서 국가 자본의 관리와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해외투자는 이 법과 회사법 그리고 관련된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투자자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타 사업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은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58조.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의 요청

1. 해외투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외투자는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금지된 사업종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투자자 또는 승인된 신용기구는 외국환 또는 해외투자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외국환으로 표시된 자본금이 200억 베트남동이상 외국으로 송금되고 이법 제54조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계획투자부는 베트남 국가은행에 서면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5. 프로젝트 문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투자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였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59조.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에 대한 절차

1. 프로젝트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해외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해외투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 진다:
 - a) 해외투자등록 양식
 - b)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만일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동등한 서류의 사본(만일 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
 - d) 외국환 재원의 수지균형에 대한 약속 또는 이 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한 대로 투자자에게 외국환을 제공하겠다는 승인된 보증기구의 약속
 - dd) 은행, 채권, 과학과 기술에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용기관법, 채권법, 과학기술법 그리고 보험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

여 발행된 해외투자에 대한 조건을 완수하였다는 투자자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계획 투자부는 해외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이 거절되면, 투자자는 설명이 제공된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다.

4. 정부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평가; 해외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처, 무효에 대한 절차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60조. 해외투자등록증의 내용

1. 투자 프로젝트의 코드
2.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3. 투자 프로젝트의 명칭
4. 프로젝트의 업종과 위치
5. 자본과 자본의 재원; 자본 출자자 자본조달 일정; 해외투자 일정
6.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7. 인센티브와 지원(만일 있다면)

제61조. 해외투자등록증의 조정

1. 투자자, 위치, 업종, 규모, 자본금, 자본금 재원, 투자일정, 투자 인센티브, 해외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이익의 사용에 관하여 해외투자프로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변경신청은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서면 변경 요청
- b)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동등한 서류의 사본(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c)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

d)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결정

dd) 해외투자등록증 사본

e) 투자자가 프로젝트 문서를 제출할 때까지 조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

3.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충분한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만일 프로젝트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면,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기 전에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투자자의 조정 요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기 전에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2조. 해외투자프로젝트의 종료

1. 해외투자프로젝트는 아래 경우에 종료된다:

a)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때

b) 프로젝트 기간이 지난 때

c) 프로젝트가 계약의 규정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종료되는 때

d) 투자자가 해외 자본금 전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때

dd) 프로젝트가 해외투자등록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호스트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못 하거나 프로젝트가 호스트 국가의 유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시작되지 아니하는 경우

e)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투자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등록된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고 투자일정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g) 투자자가 연간 조세신고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서면 보고서 또는 호스트 국가의 법에 규정된 동등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h) 해외 사업조직이 호스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한 경우

i) 프로젝트가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2.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1항의 경우에 해외투자등록증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제4부 : 해외투자의 개시

제63조. 해외투자 자본금 계정의 개설

해외투자에 따른 베트남으로부터 해외로의, 해외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내 허용된 증권기관에 개설되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등록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64조. 해외투자자본금의 이전

1. 투자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투자를 이전할 수 있다.

a) 이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투자등록증이 인가된 때

b) 호스트 국가의 유관당국에 의하여 투자가 승인되거나 허가가 난 때. 만일 호스트 국가의 법률이 투자허가나 투자승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그

국가에서 투자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c) 이 법 제63조에 규정된 자본금계정이 있을 것

2. 해외투자자본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수출,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시장조사, 연구 기타 정부가 규정한 투자준비를 위하여 외국환, 상품, 기계류와 장비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65조. 이익의 베트남으로의 이전

1. 연간 조세신고 또는 동등한 서류가 호스트국가의 법률의 규정대로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투자자는 그 이익이 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에 사용되지 않는 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기타 수입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2. 만일 이익과 기타 수입이 이 조 제1항의 규정대로 기한 내에 베트남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계획부와 베트남 국가은행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익을 베트남에 이전하는 기한은 두번 이상 연장될 수 없으며, 각 연장은 0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획투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해외투자에 대한 이익의 사용

1.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투자자는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해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해외투자에 사용되는 경우,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의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절차를 밟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자본금 계정과 금전 자본금 이전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제67조.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1. 투자에 관한 법률 문건들의 공포, 보급과 이행 지도
2.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개발과 이행 지도
3. 투자활동의 개발과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4.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와 운영
5. 이 법에 따른 투자등록증, 해외투자등록증,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과 해외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 조정, 취소
6.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과 관련된 국가관리과업의 수행
7. 투자장려의 조직과 이행
8. 투자행위의 조사와 감독; 투자관리과업의 조정
9.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과 애로사항의 해결; 진정, 고소사건의 해결; 포상과 징계처분의 결정
10. 투자에 관한 국제 협약의 교섭과 결론

제68조. 투자관리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

1. 정부는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있어 투자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한다.
2. 계획투자부는 정부가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있어 투자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3. 계획투자부는 다음의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 a) 정부와 수상에게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대한 전략, 계획과 정책의

승인을 심사할 것을 요청

b)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관한 법률문건을 제정하거나 유관 당국에게 제정할 것을 요청

c)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대한 절차에 이바지하는 문건양식의 제공

d) 투자에 관한 법률문건의 이행에 관한 지시, 조직, 감독, 조사, 평가를 제공

dd)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의 진도를 평가, 보고

e)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 운영

g)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를 감독, 평가, 조사하는 것을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h) 유관당국에게 권한을 넘어서 또는 투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되거나 조정된 프로젝트의 중지를 결정하도록 요청

i)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에 관련된 국가관리과업의 수행

k) 베트남 국내외 해외에서 투자촉진에 관한 국가관리과업을 수행

l) 투자에 관한 국제 협약을 교섭하고 결론

m) 정부와 수상에 의하여 부여된 투자관리에 관한 기타 책임과 권리

4. 기타 부와 부처 기관의 책임, 권리

a) 투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계획투자부, 기타 부와 부처 기관과의 협력

b) 법률, 정책, 표준, 기술적 규정과 지시를 제정함에 있어 책임을 지며, 기타 부와 부처 기관과의 협력

c) 이 법 제7조에 언급된 업종에서의 투자에 대한 조건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

d) 투자유치 계획을 제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함을 책임지고, 그에 관하여 계획투자부와 협력; 투자촉진의 수행

dd) 이 법의 규정대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에의 참여

e) 그 관리 하에 있는 프로젝트의 투자조건의 이행에 대한 감독, 평가와 조사 실시

g) 국가관리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 책임을 지는 한편, 도 인민위원회, 기타 부, 부처기관과 협력; 그 안의 국가관리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과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에 권한분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권한을 위임;

h) 자기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기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수행하고 계획투자부에 보고서 송부

i) 자기 관리하에 있는 관리정보시스템을 유지, 업데이트; 그것들을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통합

5. 도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리

a)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프로젝트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행함에 있어 부, 부처기관과 협력

b) 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정과 취소 절차를 이행

c) 자기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기구로서 권리행사

d) 투자자의 애로사항의 해결 또는 유관당국에게 해결을 요청

dd) 지역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계획투자국에 송부

e) 관할 하에 있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유지, 업데이트

g) 조직, 감독, 보고서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

6. 해외에 있는 베트남의 대표기구는 호스트 국가에 있는 베트남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관찰하고,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69조.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

1.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a)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

b) 전반적 규모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

2.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대한 책임

a) 국회와 인민 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감독할 권리를 행사한다.

b)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전반적 규모에 있어서 투자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실시한다.

c) 등록사무소는 자신이 투자등록증을 인가한 투자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d) 베트남조국전선은 그들의 권한내에서 공동체의 투자를 감독한다.

3.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

a) 국가 자본금이 제공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투자에 관한 결정 내용에 따라 감독과 평가를 실시한다.

b) 기타 재원이 제공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당국이 인가한 계획과 투자정책, 투자일정, 환경보호요건의 이행, 토지와 기타 자원의 사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c)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과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4. 투자에 대한 전반적 감독과 평가의 내용

a) 투자법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법률문건의 제정

b) 프로젝트 집행의 과정

c) 국가전체의, 각 부처의, 각 부처기관의, 지방당국의 투자결과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d) 애로행위에 대한 해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같은 수준의 단속기관

과 투자 당국에 제안

5. 조직과 기관은 평가를 스스로 시행하거나 능력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이 조문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70조. 국가투자정보시스템

1. 국가투자시스템은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국내투자에 대한 국가투자시스템
 - b) 내국으로의, 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국가투자시스템
2. 계획투자부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함에 있어 책임을 지며,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 투자당국의 그 시스템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투자당국과 투자자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4.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원본이고 합법적인 정보로 간주된다.

제71조. 베트남 국내 투자에 관한 보고

1. 보고하는 실체:
 -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
 - b) 등록사무소
 - c)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사업조직
2. 정기보고
 - a)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조직은 프로젝트 집행에 관하여 매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등록사무소와 지역 통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서는 자본금, 투자결과, 피고용인, 국가예산에의 지불, R&D에의 투자, 환경 보호, 기타 전문적 지표를 명시하여야 한다.

b)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발급, 조정과 취소,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매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 투자부와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도 인민위원회는 지역 투자에 관하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d) 각 부처와 각 부처기관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투자등록증과 그와 동등한 서류의 발행, 조정과 취소,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투자부는 요약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d) 계획투자부는 국가 전체의 투자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실체가 투자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관, 투자자, 사업조직은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 투자자, 사업조직은 유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정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해외투자에 관한 보고

1. 보고 실체: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

b) 해외투자가 등록된 등록사무소

c)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

2.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에 적용되는 보고규정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는 2년에 한번, 매년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해외투자자에 대한 국가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와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계획투자부는 2년에 한번, 매년 국가 전체의 투자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실제의 투자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보고규정

a) 호스트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인가되거나 허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인가 또는 호스트국가에서 직접 투자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건의 사본이 첨부된 서면 해외투자통지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에 송부하여야 한다.

b)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관한 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에 송부하여야 한다.

c) 호스트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연간 조세신고 또는 동등한 서류가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연간 세무신고, 또는 호스트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른 동등한 서류를 첨부한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과 이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관 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d) 만일 해외투자프로젝트가 국가 자본금이 제공된 것이면, 이 항의 a, b, c 목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 투자자는 기타 사업에서의 국가자본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제2항, 제3항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경유하

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에 있는 기관, 조직, 투자자는 유관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일정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장. 시행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1. 이 법을 위반한 실체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행정벌금 또는 형사소추를 받고, 야기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권한을 남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자를 괴롭히거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다.

제74조. 경과 규정

1.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투자허가나 투자허가증을 인가받은 투자자는 인가된 투자허가나 투자허가증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계속 집행할 수 있다. 등록사무소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그것을 투자허가등록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이 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 투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를 집행해 온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대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투자등록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 법의 효력일 전에 제정된 법률문건에 있는 사업투자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4. 정부는 이 조 제1항, 제2항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75조. 하이 테크롤로지법 No. 21/2008/QH12 제18조 제1항에 대한 수정
하이 테크롤로지법 No. 21/2008/QH12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
다.

"1. 하이 테크놀로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이 법의 제6조에 규정된 우선순위가 주어진 하이테크 상품 목록에 있는 하이테크 상품의 생산;
- b) 베트남 기술 규정과 표준(또는 베트남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조에 대한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인 해법의 적용과 품질 통제
- c) 기타 수상이 정한 기준

제76조. 효력

- 1. 이 법은 2015년 7월 1일 효력을 갖는다.
- 2. 투자법 No. 59/2005/HQ11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와 과업에 관한 국회의 결정 No. 49/2010/QH12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무효이다.
- 3. 정부와 유관당국은 맡겨진 조항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 법은 2014. 12. 26.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3대 국회의 8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 싌 흥